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088호

##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
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·신체적·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”를 “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”로, “환경조성을 통해”를 “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”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음주청정지역지정)”을 “(음주청정지역의 지정)”으로 하고,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”을 “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규정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「주택법」 제2조 제9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
3. 버스 정류소·택시 승강장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